「法과 政策」第24輯 第1號, 2018. 3. 30.
濟州大學校 法과政策硏究院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for School Violence in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김 갑 석*
Gim, Gab-Seok

목 차

Ⅰ. 서론
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
Ⅲ.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폭력현황과 학교폭력으로부터의 보호
Ⅳ.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대책
Ⅴ. 결론

국문초록

학교는 그 안에서 작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이에 학교 속에서도 많은 사회문제들이 발생한다. 그 중에 최근 학교 속 가장 큰 사회문제가 바로 학교폭력의 문제이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집단 따돌림의 형태로 나타나는 '왕따'이고, 왕따가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학생들의 의견차이일 것이다. 다른 의견이나 모습을 가진 학생을 학교속에서는 소수자이거나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폭력의 경우 그 피해자에 해당하는

논문접수일 : 2018.01.30.
심사완료일 : 2018.02.21.
게재확정일 : 2018.02.21.
* 법학박사 · 대구대학교 강사

유형의 학생이 학교속의 소수자이거나 사회적 약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중 학교구성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도 학교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피해학생이 되는 경우도 많다. 다문화가정의 학생 중에서는 피해학생이 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로 가해학생의 모습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학생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의 원인과 전혀 상관없는 차별적인 원인으로 피해학생이 되기도 한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이러한 차별적인 원인들로 인해 일반 학생보다 학교폭력으로부터의 더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것을 보여 준다. 2017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학교폭력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언론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눈이 실명하거나 코뼈가 부러지는 사건을 접할 수 있었다. 이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폭력은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이 틀림없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첫째, 다문화인권교육을 학생을 비롯하여 학교구성원, 그 가족들까지 양적·질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다문화에 대해 차별 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입법을 통하여 학교폭력예방법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보호'조항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정의 학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실태조사과정에서도 올바른 예방과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정확한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언어지원을 모든 국가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안에서 발생되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국가와 학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소수자, 사회적 약자,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폭력, 다문화가정 학생의 보호, 학교폭력

Ⅰ. 서론

국가라는 큰 테두리 안에는 크고 작은 사회가 많이 존재한다. 국가 속에 있

는 사회의 구성원은 성인이며, 흔히 사회생활을 하는 시기를 성인이 된 이후부터 라고 한다. 우리는 성인이 되어 사회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교육을 받는데 이때 교육의 장이 바로 학교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기 전인 청소년기에 사회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학교에서 받는다. 즉, 학교는 작은 사회인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회성을 기른다고 하고, 사회성을 위해 인원이 많은 대규모의 학교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여러 가지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집단 속에는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흔히 법이 존재한다고 한다. 하지만 분쟁이 아닌 단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법이 아닌 다수의 의견으로 판단을 내리는 다수결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의사결정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수결의 원리는 다수의 의견만을 존중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은 하되,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James Madison은 자신의 저서에서 "다수가 공통의 이익이나 열정으로 결합되는 경우에 언제나 소수의 권리는 위험해진다"[1]고 하여 다수자와의 대칭관계에서 소수자의 권리 또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2] 학교안에서도 다수자와 소수자가 존재한다. 전통적인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모습에서 소수자가 존중되거나 보호되는 일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과의 교육적 차원에서는 소수자가 보호되었지만,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닌 학생과 학생간의 관계에서는 다수자가 소수자를 지배하는 경향이 많았다. 소수자는 소외가 되거나 다수자의 편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등의 모습을 연구자의 관점에서는 봐 왔다. 특히, 다수자는 생각의 논리인 경우도 있지만 힘의 지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많았다. 학년이 낮아질수록 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학교는 작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속에서도 많은 사회문제들이 발생한다. 그 중에 최근 학교 속 가장 큰 사회문제는 학교폭력의 문제이다. 학교밖에서도 학교폭력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일단 그 시작점은 학교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따돌림이다. 학교

1) 존 엘스터·오정진 역, "다수결의 원칙과 개인의 권리", 「현대사상과 인권」, 사람생각, 2000, 215면.
2) 권영설, "소수자 권리보호의 법적 기초", 「(최신)외국법제정보」 제23호, 한국법제연구원, 2002, 9면.

폭력예방법 제2조 1의2에서 "따돌림"은 2명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친구를 고의로 괴롭힐 생각이거나,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를 대상으로 발생한다. 따돌림을 주도하는 학생은 교실의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3] 일반적으로 교실에서는 소수의 인원이 따돌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가진 학생을 학교속에서는 소수자이거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학생이 학교속의 소수자이거나 사회적 약자일 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이다. 이 중 학교구성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도 학교폭력에 많이 노출되어서 피해학생이 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학생이 되지 않기 위해 가해학생의 모습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될 수 있는 원인과 전혀 상관없는 원인으로 피해학생이 되기도 한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일반 학생보다 학교폭력으로부터의 더 위험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학교폭력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학교속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지 이론적 정립을 한 후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폭력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학교폭력이라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

1. 소수자

소수자에 대한 정의를 쉽게 내리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소수자의 개념은 특별한 인종, 민족성 등 다른 사회구성원과는 상이한 범주에 집착하는 특정인의

3) 권이종, "학교 내에서의 집단 따돌림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학연구」 제7권 제2호, 한국청소년학회, 2000, 13면.

집단이 그 집착을 이유로 다른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차별을 받을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경우 더 이상 차별을 정당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에 대한 정의를 내린 학자들은 많다. 먼저 국내의 학자들은 소수자를, "사회구성체의 정치·사회·경제·문화의 제반 영역에서 인종, 성, 경제적 능력, 사상이나 도덕, 기타의 이유로 지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치와 상이한 입장에 있는 부류"라 하면서 소수자를 총괄적인 개념이 아닌 분파적인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5] 또한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성, 나이, 인종, 사상, 경제력, 성적 취향, 혹은 기타의 측면에서 지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준이나 가치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로 정의하기도 하였다,[6] 국외의 학자들은 Louis Wirth가 "그들의 정치적·문화적 특성 때문에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한 부류"로 정의했고, F. Caporri는 "국가내에서 숫적으로 열등하며, 비지배적인 위치에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단지 은밀하게 그들의 문화, 전통, 종교 또는 언어를 지키려는 결속력을 보여 주는 부류"로 소수자를 정의하였다.[7] 즉, 소수자는 특정 역사·사회적 한계 내에서 숫적으로 소외된 부류로서 그 주체가 어느 시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그 대상이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8] 생각건대, 어느 사회이든 그 사회구성원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소수자라는 집단은 존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소수자의 속성으로는 "첫째, 다수자에 대한 관계에서 볼 때 사회의 중심세력

4) Heinze, Eric, Sexual orientation : a human right : an essay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ordrecht ; Boston : M. Nijhoff Publishers, 1995, p. 53(이발래, "인권법상 소수자 보호체계와 차별심사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9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03, 339면에서 재인용).

5) 여기서 분파적인 개념이란 말은 예를 들면, 정치적 소수자라고 해서 문화나 사회경제적인 소수자일 수는 없다는 뜻이다(안경환, "논단: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리", 「법과사회」 제2권, 법과사회이론학회, 1990, 115면).

6) 김상학, "소수자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제7권,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4, 169면.

7) 이발래, 전게논문, 340면.

8) 장미경, "한국사회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 「한국사회학」 제39집 6호, 한국사회학회, 2005, 162면.

밖에 위치한 집단이며, 둘째, 사회의 중심세력 밖에 위치한 이상 그 집단의 양적인 숫자는 소수자 개념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셋째, 단순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9] 또한 소수이긴 하지만 소수자는 주변성과 타자성, 일탈이 극대화되어서 범법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10]

이러한 측면에서 소수자는 다수자에 대한 횡포와 독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11] 우리 헌법은 소수자의 보호에 대하여 직접적인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에서 그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근거규정으로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을 들 수 있다. 인간의 존엄은 어떠한 상태에서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자치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간이 본질적이고도 고유한 가치로서 모든 경우에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2] 이렇듯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국가원리의 실질적 이념이자 목적이다.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존엄, 즉 물질적 최저한의 생활보장을 비롯한 인간다운 생활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형식원리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인간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객관적인 조건들이자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13] 이에 인간은 존엄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이 외에도 재외국민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조 제2항,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4항, 제5항, 근로자의 노동3권을 규정한 헌법 32조, 여자,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등의 사회보장을 규정한 제34조, 모성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2항,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5항, 소비자의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124조 등이 간접적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다.[14]

---

9) 안경환, "법치주의와 소수자 보호", 「법과사회」 제12권, 1995, 9면.

10) 윤수종, 「우리시대의 소수자운동」, 이학사, 2005, 17-18면; 장미경, 전게논문, 159면.

11) 김운용, 「위헌심사론」, 삼지원, 1998, 409면.

12) 헌재결 2002.7.18. 2000헌마327.

13) 방승주, "헌법주석[Ⅰ]", 「사단법인한국헌법학회편」, 박영사, 2013, 285면.

14) 소수자보호의 원칙의 헌법의 보완적 근거규정으로는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규정한 헌법 전문과, 국민의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수자보호의 원칙의 헌법근거규정에 있

한국에서의 소수자로서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동성애자, 외국인노동자[15] 등이 있다. 그 분류에 있어서 정치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 사회적 영역, 도덕적 영역, 문화적 영역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살펴보면 첫째, 정치적 영역의 소수자란 선거권과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공무담임권 등에서 다수자와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자, 둘째, 경제적 영역의 소수자란 경제활동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거나,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하여 불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자, 셋째, 사회적 영역의 소수자란 빈민층 또는 근로자 계층이 될 수 있고, 문화적 소수자란 교육의 기회균등과 문화적 활동에 있어서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16]

2.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은 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약자라는 개념은 비교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 기준대상에 따라 강자도 약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약자도 강자의 위치에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강자와 약자를 나누어서 강자의 반대에 속하는 자를 뜻할 수도 있겠지만. 헌법적으로 본다면,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국가의 원리에서 나온 용어이다.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17] 이에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치국가적 방법으로 모든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려는 국가적 원리를 사회국가의 원리라고 한다.[18] 사회국가의 형

어서는 권영설, 전게논문, 23면.

15) 김상학, 전게논문, 170면.

16) 권영설, 전게논문, 14-16면 참조.

17) 헌재결 2002.12.18. 2002헌마52.

1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142-143면.

성에 있어 사회구조적 모순 및 그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희생이 있었고, 이러한 사회국가가 확립되면서 사회적 약자를 사회구조적 모순의 희생자로 인식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는 자신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서는 것으로 평가된다.[19]

한국에서의 사회적 약자의 여러 측면에서 대두할 수 있는데, 그 대상별로는 노인,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있고, 영역별로는 정치, 경제,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존재할 수 있다.[20]

3. 소수자·사회적약자로서의 다문화가정 학생

다문화가정의 학생이란 다문화가정에서 성장하여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다문화가정이란 "다문화 + 가정"의 결합어라고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민족 내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문화라고 하고, 여러 문화의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을 다문화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다문화를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혼재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다문화가족을 "국적, 인종, 문화 등이 서로 다른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한다.[21] 법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

19)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자체가 사회적 모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된 것이다. 미국에서 많이 발전되었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의미가 그런 사회구조적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대해서 차진아,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관한 연구-사회적 약자의 유형에 따른 인권보장의 구체화방향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199면.

20) 정극원, "국민행복 실현의 동반자로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일고찰", 「유럽헌법연구」 제14호, 유럽헌법학회, 2013, 268면.

21) 네이버 국어사전 (최종검색일, 2017.11.28.)
http://krdic.naver.com/search.nhn?query=%EB%8B%A4%EB%AC%B8%ED%99%94&kind=all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하는데,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정리하자면, 다문화 가정은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자와 국적법에 따라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결혼 등을 통하여 가족이 된 가정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은 일반 가정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다문화가정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제결혼에 의해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가치관의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고, 둘째로,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서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폭력 노출 위험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22]

다문화가정은 한국사회에서 아직까지는 사회현상에서 본다면 소수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조사한 '전국다문화가정실태조사'에 의하면,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반집단으로부터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한 사람이 묻는 문항에서 2015년도는 9.4%가 2012년도는 13.8%가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2012년도 보다는 수치적으로 %가 줄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1〉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비율[23]

	여성	남성	전체
2015년(%)	9.7	9.1	9.4
2012년(%)	12.2	15.8	13.8

22) 신양균, "다문화가정내 가정폭력과 회복적 사법", 「법학연구」 제34호,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354면; 오세연·곽영길,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2호, 2010, 288면.

23) 여성가족부,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최종검색일 2017. 11.29.).

이 결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다문화 가정은 특징만 보더라도 현재 강자이기보다는 약자의 지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가는 다문화가정을 사회적 차별에서 보호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다문화가정의 학생도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신체적, 언어,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편견, 그리고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24] 현재 다문화가정의 학생비율과 수는 계속적으로 확대[25]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는 언제 늘어날지도 모르기에, 이에 대한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

Ⅲ.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폭력현황과 학교폭력으로부터의 보호

1.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폭력현황

최근 학교에서 다문화가정의 학생을 흔히 만날 수 있다. 그만큼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2017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올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는 십만명이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2006년 9,389에 비하면 10배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표 2〉에서와 같이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 가정 학생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4) 이애련,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학교부적응 및 폭력문제 해결방안에 일본의 다문화정책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9권 제2호,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2015, 114면.

25)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는 2006년에 9,389명에서 2017년 현재 109,387명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교육부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최종검색일 2017.11.29.).

〈표 2〉 연도별 다문화 가정 초·중·고 학생비율[26)]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비율(%)	0.26	0.35	0.44	0.55	0.70	0.88	0.95	1.34	1.67	1.90

이렇게 다문화가정 학생의 증가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폭력의 증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 학교폭력의 문제도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인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폭력문제 또한 쉽게 넘겨서는 안될 문제이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노출 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인 편견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표 3〉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한 사람:친구[27)]

		전혀 차별받지 않았다 (%)	별로 차별받지 않았다 (%)	약간 차별을 받았다 (%)	심한 차별을 받았다 (%)
연령	9세이상11세이하	4.8	9.5	71.6	14.1
	12세이상14세이하	3.7	4.4	85.3	6.6
	15세이상17세이하	11.7	9.2	67.6	11.6
	18세 이상	22.4	17.5	53.5	6.6
재학 여부	다닌다	6	8.7	75.1	10.2
	다니지 않는다	34.3	21.2	37	7.6
전체	비율	11.1	10.9	68.2	9.7
	인원	631	619	3,856	551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차별한 사람 중 친구에게 차별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는 답변이 88.9%가 나왔다. 그 중 친구로부터 심한

26)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최종검색일 2017.11.29.).
27)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최종검색일 2017.11.29.).

차별을 받았다고 답변한 비율이 9.7%나 되었다. 또한, 9세이상 11세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친구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는 비율이 95.2%, 12세이상 14세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친구들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는 비율은 96.3%, 15세이상 17세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친구들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는 비율도 88.3%나 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친구들에게 심하게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지만,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약간의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 중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다니지 않는 자녀보다 훨씬 더 많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의 차별은 결국 학생들끼리의 교우관계에서도 서열 등이 만들어지고, 이는 〈표 4〉에서 나타나듯이 놀림이나 따돌림, 뒤에서 수근대는 행위, 협박이나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돈이나 소지품을 빼앗기는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당하는 학교폭력의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의 학생은 신체적 폭력이나 금품 갈취 형태의 물리적 폭력보다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특성에서 오는 언어·외모·문화·환경 등의 이유로 놀림·무시·따돌림 등의 정서적 폭력이 월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차별 실태조사[28](복수응답)

항 목	비율(%)
발음이 이상하다고 놀림을 당한 적이 있다.	41.9
따돌림을 당하거나 “너희나라에 이런 것 없지”라며 무시당한 적 있다.	36.6
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뒤에서 수군댄다.	30.6
이름대신 나라이름을 부르거나 피부색이 다르다고 놀림당한 적이 있다.	25.3
“너희나라로 돌아가”라고 하거나(불법체류 등을)신고하겠다고 협박당한 적이 있다.	21.0
손이나 주먹으로 맞거나 발로 걷어 차인 적이 있다.	15.1
돈이나 소지품을 빼앗긴 적이 있다.	9.1

28) 이애련, 전게논문, 120면에서 재인용(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국내 다문화가정 아동 186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차별 실태조사결과이다. 출처 : 인권신문, 2012.5.21.)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4조에 근거해 실시한 여성가족부가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수가 3,065명이였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5%에 해당하는 수치이지만, 9세이상 11세이하의 응답에서는 7.9%나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있기 때문에 적은 수치라 할 수 없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함에 있어 회복의 속도가 매우 느리고, 회복 불가능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명의 학교폭력이라도 피해자가 없도록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29] 〈표 5〉에서와 같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에는 그 피해의 유형에 있어, 말로 하는 협박, 욕설이 65.1%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이 34.1%로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에서 어떤 괴롭힘이 더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정신적 괴롭힘이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큰 유형 중에 하나임은 틀림없다. 특히 정신적 괴롭힘의 유형은 가해학생의 가해행위가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고, 증거가 잘 남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관찰이 매우 중요한 유형이다. 이러한 정신적 괴롭힘의 유형이 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 한 것으로 봐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보호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욕설과 비방을 한 경우가 10.9%, 손, 발 또는 도구로 맞거나 특정한 장소에 갇히는 행위도 10.2%로 나타났다. 특히, 도구로 구타하거나 특정한 장소에 갇히는 행위의 비율도 10%를 넘어 다문화가정 학생이 강한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것도 확인된다.

〈표 5〉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유형[30](복수응답)

	성별		연령			전체	
	여자	남자	9세이상 11세이하	12세이상 14세이하	15세이상 17세이하	비율	인원
말로 하는 협박, 욕설 (%)	64.3	65.7	72.5	53.6	50.7	65.1	1,994

29) 김갑석,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평가-학교폭력예방 당사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입법평가연구」 제11호, 한국법제연구원, 2017, 64-65면.

30)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집단 따돌림 (왕따) (%)	41.9	27.7	30.2	36.3	51.6	34.1	1,046
강제 심부름 같은 괴롭힘 (%)	3	7.2	5.4	6.8	0	5.3	163
돈 또는 물건을 빼앗김 (%)	4.4	13.7	11.9	5.4	4.3	9.5	290
손, 발 또는 도구로 맞거나 특정한 장소에 갇힘 (%)	3.9	15.5	13.4	5.4	0	10.2	312
성적인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행동 또는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위 (%)	2.9	2.7	2.4	3	6.2	2.8	85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욕설과 비방(%)	13.7	8.5	5.8	22.3	16.1	10.9	333
스토킹 (%)	0.6	0	0	1.1	0	0.3	9

최근 언론에 보도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폭력 사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장난감 화살의 앞부분을 문구용 칼로 화살 앞부분을 깎아 뾰족하게 만들어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발사하여 눈을 실명한 사건[31]과, 평택에서 고3학생들이 나이 많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폭행을 가해 코뼈를 부러뜨리고 몸 곳곳에 타박상을 입힌 사건[32]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전자의 사건은 화살을 발사하기 전에 주변 친구들이 말렸고, 피해 학생이 화살을 피하려고 베개를 이용하여 피하다가 잠시 베개를 내린 순간 화살을 발사하여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눈이 실명되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약한 다문화가정 학생을 고의적으로 다치게 한 가해학생은 전학조치가 되었다. 후자의 사건은 코뼈가 부러지는 피해를 당하게 한 이유가 반말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충격적인 것은 피해 학생이 중국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귀국하여 아직 한국

31) 이하에 나오는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장난감 화살 깎아 동급생 실명시킨 초교 6학년", 2017.10.23. 메디컬투데이 기사(http://www.mdtoday.co.kr/mdtoday/print.html?no=298888).

32) 이하에 나오는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평택서 고3 학생들이 나이 많은 다문화가정 1학년생 폭행 " 2017.9.8. 뉴스1 기사(http://news1.kr/articles/?3095648).

말이 서툴러서 그러한 것임을 모르고 오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다. 끊이지 않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폭력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차별적 시각을 가진 가해학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다문화가정 학생의 보호가 더 필요해 보인다.

2.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폭력으로부터의 보호

학교라는 작은 사회속에도 학생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사건도 발생한다. 학교폭력도 그 중 하나이다.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학교안에서의 소수자가 존재하고 사회적 약자도 존재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은 학교안에서 소수자이며, 사회적 약자이다.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신체적, 언어,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편견, 그리고 경제적 문제 때문에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 매우 높다. 반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괴롭힘과 따돌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학교폭력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입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점차 증가추세인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을 그대로 방치하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한다면, 안타깝게도 '외로운 늑대'들이 일으키는 미국·유럽식의 테러가 남의 이야기만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교폭력 문제를 방치할 경우 사회 전반적인 안정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경고의 의견도 있다.[33]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국가는 다문화 학생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방안

33) 2017년에 개최한 "한·유네스코 국제심포지엄"에서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의 인터뷰내용과 최수향 유네스코 국장의 인터뷰 내용을 재인용하였다. 인터뷰 내용에 관해서는 "다문화학생 대상 학교폭력, 방치하다 유럽식 '테러' 부를 수 있다" 2017.1.19. 헤럴드경제 기사(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119000135)

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Ⅳ.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대책

1. 다문화인권교육의 확대로 차별없는 학교분위기 조성

학교폭력의 문제에 있어서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비다문화가정의 학생에 비하여 여러 가지 차별의 이유 등으로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고통을 받고 있기에 학교폭력의 피해자의 전체의 일반보다 더 학교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노출을 막기 위해서는 다문화인권교육이 확대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다문화인권교육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배제, 차별,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엄한 존재로서 처우받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게 한다.[34] 이에 학교에서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다문화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구성원 모두가 다문화 학생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사라져야 다문화 학생이 학교폭력의 위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학교내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를 비롯하여 학교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문화인권교육을 통하여 평등권보장과 다양성 존중,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다문화학생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우리와 동등하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를 비롯하여, 학생의 학부모까지 다문화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제도에 있어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다문화인권교육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에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다문화인권교육에 대한 교육에 있어 다문화 학생과 그 학부모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확대에 있어서 단순히 교육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교육 방식의 다양화를 통하여 질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다문화인권교육보다는 향상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국가와 학교는

34) 나달숙, "다문화 인권교육의 이해와 실천 방향", 「법과인권교육연구」 제7권 제2호,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4, 36면.

다문화인권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35]

2. 학교폭력예방법상의 개정을 통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보호

다문화가정 학생이 피해학생인 학교폭력 사건은 다른 학교폭력사건에 비해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문화가정의 학생의 경우 한국어의 구사능력이 미흡할 수도 있고, 그 부모에 있어서도 소통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될 것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제16조에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16조2에는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에 대하여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다문화가정의 학생도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면 다문화학교폭력관련 전문가의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방안으로 2016년 11월 2일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현재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이다.[36] 이 대표발의안은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경우 언어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의견진술 및 심리상담 등의 보호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여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된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다문화가족 피해학생을 조력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족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학교폭력예방법에 제16조3을 신설하여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소속된 전문인력이 피해학생을 조력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5) 다문화인권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는 강현민·강상우, “다문화인권교육의 개념 정립과 발전 방향 소고”, 「법과인권교육연구」 제8권 제3호,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5, 19면.

3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제안일자:2016년 11월 2일. (최종검색일 2017.11.29.)(http://likms.assembly.go.kr/)

의 전문인력이 학교폭력예방의 전문인력이 아니고, 각국의 언어구사가 자격요건이 아니고, 통·번역서비스에 있어서도 학교폭력 분쟁 등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37] 이에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제16조3의 다문화가족 피해학생의 보호에 대한 입법은 찬성하는 대신에 피해학생의 필요한 전문인력을 다문화가정의 전문가와 학교폭력 전문가, 학생 상담전문가, 이들의 통역이 가능한 통역가로 구성원 다문화가족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문팀(이하에서는 '전문팀'이라 한다)을 구성해야 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전문팀을 각 지역 교육청에서 구성하도록 동법 제11조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3. 학교폭력실태조사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보호

교육부와 전국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의 학교폭력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참여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6개국(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 타갈로그어)으로 된 설문을 실시하였다.[38] 하지만, 현재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국가는 이보다 훨씬 많으며, 6개 지역 이외의 언어를 구사하는 다문화 학생들은 언어지원을 못 받고 있다.[39] 이러한 지원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시행된 제도이지만 이 제도 안에는 또다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6개국의 언어지역이 아닌 예를 들면 몽골어를 사용하는 다문화 가정은 실태조사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다문화가정의 학생인 경우에는 미리 필요한 언어를 조사하여 필요한 언어는 모두 서비스해 주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

37)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검토보고, 2017.2. (최종검색일 2017.11.29.)(http://likms.assembly.go.kr/)

38)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청 별로 일제히 실시 다문화가정 학생 위해 6개국 다국어 설문 제공", 2016.9.20. 글로벌이코노믹 기사.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60920110059104253 8_1&md=20160920111826_I)

39)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Ⅴ. 결론

2017년 한해만 하더라도 많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학교폭력은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을 비롯하여 강릉 여고생 집단폭행사건, 울산 남중학생 자살사건, 전주 중학생 자살사건, 천안 여중생 폭행사건 등이 있었고, 이와 같은 학교폭력문제의 언론보도는 끊임없이 이어졌다.[40] 2011년에 대구의 중학생 자살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준 이후로 학교폭력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사건은 시간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교묘해 지고 있다. 이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아직도 힘들어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학교에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들도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피해뿐 아니라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 때 학교폭력의 문제의 원인부터 시작하여 해결과정에 있어서도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사회적 차별로 인하여 어려움이 겪고 있다.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조사과정에 있어서도 언어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학부모와의 소통 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이에 학교에서는 첫째, 다문화인권교육의 양적·질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여 학교구성원과 그 가족들이 모두 다문화에 대해 차별 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입법을 통하여 학교폭력예방법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보호'조항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정의 학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실태조사과정에서도 올바른 예방과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정확한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언어지원을 모든 국가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소수자 문제와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법치국가에서 보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상은 소수자 보호를 통한 평등이념의 확산과 정착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41] 특히,

40) "'무서운 10대' 청소년 잔혹 범죄 백태", 2017.9.11. 일요시사 기사(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522); "연이어 터지는 학교폭력…서울·부천·평택서도 집단폭행", 2017.9.7. 이데일리 기사(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936006616057824&media CodeNo=257&OutLnkChk=Y).

41) 안경환, 전게논문, 1995, 14면.

학교안에서 발생되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국가와 학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며, 그로 인해 그 지위에 있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권영성,「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김운용,「위헌심사론」, 삼지원, 1998.

윤수종,「우리 시대의 소수자운동」, 이학사, 2005.

2) 논문

강현민·강상우, “다문화인권교육의 개념 정립과 발전 방향 소고”,「법과인권교육연구」, 8(3),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5.

권영설, “소수자 권리보호의 법적 기초”,「(최신)외국법제정보」, 23, 한국법제연구권, 2002.

권이종, “학교 내에서의 집단 따돌림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청학연구」, 7(2), 한국청소년학회, 2000.

김갑석,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평가–학교폭력예방 당사자의 의무를 중심으로–”,「입법평가연구」 11, 한국법제연구원, 2017.

김상학, “소수자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제7권,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4.

나달숙, “다문화 인권교육의 이해와 실천 방향”,「법과인권교육연구」 7(2),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4.

방승주, “헌법주석[Ⅰ]”,「사단법인한국헌법학회편」, 박영사, 2013.

신양균, “다문화가정내 가정폭력과 회복적 사법”,「법학연구」, 34,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안경환, “논단: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리”, 「법과사회」 2, 법과사회이론학회, 1990.
안경환, “법치주의와 소수자 보호”, 「법과사회」 12, 법과사회이론학회, 1995.
오세연·곽영길,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7(2), 2010.
이발래, “인권법상 소수자 보호체계와 차별심사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9(1), 한국헌법학회, 2003.
이애련,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학교부적응 및 폭력문제 해결방안에 일본의 다문화정책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2),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2015.
장미경, “한국사회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 「한국사회학」 39(6), 한국사회학회, 2005.
정극원, “국민행복 실현의 동반자로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일고찰”, 「유럽헌법연구」, 14, 유럽헌법학회, 2013.
존 엘스터·오정진 역, “다수결의 원칙과 개인의 권리”, 「현대사상과 인권」, 사람생각, 2000.
차진아,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관한 연구–사회적 약자의 유형에 따른 인권보장의 구체화방향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2),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2. 국외문헌

Heinze, Eric, 「Sexual orientation : a human right : an essay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ordrecht ; Boston : M. Nijhoff Publishers, 1995.

3. 기타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네어버 국어사전(http://krdic.naver.com/)

[Abstract]

A Study on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for School Violence in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Gim, Gab-Seok
PH.D. Docent, Daegu University

The school constitutes a small community within it, thus many social problems occur in the school. The biggest social problem in schools now is violence. One of the biggest problems of school violence is bullying, and one of the reasons for being a target for bullies is those who have a different opinion. A student with a different opinion or appearance can be considered as a minority or socially vulnerable in school. In this aspect, school violence victim students are likely to be a minority or a socially weak person in the school. Many of the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ose proportion in school is continuously increasing, are exposed to school violence and become victims. Among the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some students decide to be bullies because of structural reasons which could make them victims otherwise. In particula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ecome victims due to discriminatory reasons that are not related to the cause of the victim of general school violence. This indicates that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re in a more vulnerable

position from school violence than regular students due to these discriminatory causes.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2017, the number of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continues to increase, and school violence continues to occur. This year, there were cases in the media where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lost eyesight or broke their nasal bone. School violence in multicultural families must be a task that the government and society must solve. As a measure to prevent school violence against multicultural families, first, multicultural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extended to students, school members, and their families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so that a school culture without discrimination against multiculturalism can be created. Second, through legislation, the provision of 'Protection of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to protect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system. Third, in order to propose correct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language support to all countries to investigate the actual school violence. The problem of the minority and the socially weak within the school should be solved by the government and the school to guarantee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receive their education in the school safely and happily.

Key words : Minority, socially weak, stud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school violence, Protection of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school violence